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공보담당관 지청장 박경춘
전화 031-8053-4301/ 팩스 031-8053-4555

보 도 자 료

2013. 5. 24.(금)

자료문의 : 형사2부장실
전화번호 : 031-8053-4390,1
주책임자 : 부장검사 이기옥

제 목

**동물보호법 개정(징역형 신설) 이후 최초 구공판
- 살아있는 이웃집 개를 기계톱으로 절단내 즉사시킨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기로
- ‘생명 존중’ 입법취지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경춘)은 2013. 5. 24.(금)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기계톱으로 이웃집 개를 내리쳐 잔인하게 죽인 피의자를 동물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검찰시민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출석시켜 시민위원들의 사건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시민위원들의 자율적인 토론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음
- 본건 기소를 통하여, 동물학대에 대하여 징역형을 신설한 개정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법집행 과정에서 현실화하여 ‘생명 존중’이라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사건의 개요

- 피의자 : A○○(50세), 황토방 운영
- 피의사실 요지

2013. 3. 28. 이웃집 개(로트와일러)가 자신의 개를 물어뜯는 등 공격하였다는 이유로 기계톱으로 이웃집 개를 1회 내리치는 잔인한 방법으로 등부분이 절단되어 죽게 함으로써 동물보호법위반 및 재물손괴

②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및 사건 처리 과정

●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2012. 5. 22.(수) 11:0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소회의실

※ 검찰시민위원회는 만 20세 이상의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와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제도임

● 검사의 사건 설명

주임검사가 사건의 개요, 피의자 및 피해자의 주장을 상세히 소개하고, 정당방위·긴급피난에 관한 법리적 설명을 제공함

※ 피의자의 주장 요지

황토방을 운영하는 피의자는 당일 아침 기계톱으로 나무를 절단하고 있던 중 자신의 개가 짖어대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보니, 피해 개가 자신의 개를 물어뜯고 있었고, 이를 떼어내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기계톱의 시동을 걸어 톱날이 돌아가게 한 후 1회 내리친 것은 인정하나, 피해 개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

⇒ 서로 싸우고 있는 개들을 떼어내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개가 2등분으로 절단될 정도로 기계톱을 내리친 행위는 정당방위·긴급피난 등에 대한 법리로도 용납할 수 없음

●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참고인진술 직접 청취

동물보호단체 대표(B○○)를 검찰시민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본건 직전 CCTV 영상, 피해 개의 평소 영상 등을 통하여 사건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동물학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함

※ 동물보호단체 발언 요지

본건에서 피해 개를 묶어놓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건의 본질(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는 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발언하는 한편, '동물학대'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J. M. Macdonald의 'Triad of Sociopathy'(반사회적 행동의 3유형으로서의 동물학대) 등의 이론과 외국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함

● 검찰시민위원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토론

· 처벌불가피론

- 피해 개의 등과 복부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무참히 죽인 범행으로서 기소함이 상당하다는 의견,

- 피해자와 불편한 이웃 관계였던 피의자가 평소 감정을 실어 의도적으로 피해 개를 절단한 범행으로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 등
- 동정론
 - 피해 개가 '로트와일러' 종의 맹견임에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 피의자의 개 또한 상처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해 개가 피의자의 개를 공격한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방어행위라는 점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

● **검찰시민위원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으로 의결**

약 1시간 30분간의 심의 끝에, 시민위원 9명 전원 기소의견으로 의결함

●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 피의자 불구속 기소**

검찰시민위원회와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시동이 걸린 기계톱으로 개를 내리치는 의도적 행위에서 동물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3 **본건 결정의 의의**

● **개정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한 기소**

2012. 7. 1.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등의 동물학대에 대하여 징역형을 규정한 조문을 신설하였던 바, 위와 같은 법 개정 취지를 법집행 과정에서 현실화하여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한 것임

※ 통상 본건과 같이 동물을 죽인 사건의 경우 단순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 실정이며, 경찰도 그동안 관행에 따라 단순 재물손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

● **'생명 존중'이라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

본건의 불구속 기소를 통하여, 비록 동물일지라도 그 생명은 존중함이 마땅하다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첨부** : 현장사진(피해 개, 기계톱) 2장. 끝.